

1. 개정이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치용품으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21.5.17.)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비치대상시설과 수량을 정하고,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을 확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및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

에 설치토록 함

나.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안 별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4. ~ 5. 16.)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2), (3)을 각각 (3), (4)로 한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선수대기실, 경기장 진입을 위한 출입구(문)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3)의 (나), (다)를 각각 (다), (라)로 한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출입구(문)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1)(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선수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로 한정한다.

별표 3의 판매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장애인용 쇼핑카트	

포함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2), 제13호가목(3)(나)·나목(1)(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판매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면적	층수
당해 연면적	용도
구조	공사종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		미설치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안내시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

